

Mg.a.1

노인여성인권 긴급 공청회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 일시 : 1999년 1월 25일

□ 장소 : 종로성당 3층 강당

주 최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후 원 : 여성신문사

HL  
성리

|    |    |    |
|----|----|----|
| 일시 | 장소 | 주최 |
|    |    |    |

노인여성인권 긴급 공청회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 일시 : 1999년 1월 25일

□ 장소 : 종로성당 3층 강당

주 최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후 원 : 여성신문사



## “인권의 사각지대 여성노인” 여성노인 인권을 바라보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입장

「남편이 결혼 초부터 아내를 무시하고 상당한 수입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만 대준 점은 인정되지만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으로 볼 때 52년간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남편이 최근 의치증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에 따른 정신장애 탓인 만큼 아내는 오히려 남편을 돌보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요지이다. 지난 50여년간을 가부장적 사회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외면 당하며 살아 온 이들에게 법은 단지 구시대적인 잣대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 병든 남편을 부양하며 더욱 강화되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구원을 요청했던 사람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왔으니 그냥 그 상태로 생을 마감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것은 긴 인고의 세월을 감당하다 법에 구원을 요청해야 했던 이들에게 무기형을 언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다.

「걸핏하면 칼과 몽둥이, 또한 폭력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히고, 기물파괴, 외도, 욕설로 평생을 제대로 향이나 대항을 해볼 꿈도 꾸지 못한 채 학대당한 삶을 살며 남편이 악한 행동을 할 때에도 참고 참으면 된다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무엇 때문에 이 생을 저와 함께 더 지속해야 합니까? 본인은 이제 마지막(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이 (모든)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본인의 문제를 정리하고 싶습니다...이혼을 하고, 적절한 재산 분할 청구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본인은 죽어도 여한이 없고 돈은 제 이차 문제이고 한 여자의 50년 인생자취를 자존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 싶어 이혼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김창자 할머니는 호소하고 있다. 비단 김창자 할머니의 경우 뿐 아니라 이른바 ‘황혼이혼’이라 불리는 노인이혼 문제에서도 60세 이상 노인 부부 중 21.5%의 부부가 폭력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정폭력은 많은 경우 긴 결혼생활에 중지부를 찍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연세대 김재엽 교수 저, 한국 노년학 제 18권 1호 논문 「한국노인 부부의 부부폭력 실태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연구」 참조) 98년 1월-10월까지 서울여성의전화에서 접수된 총 1,771건의 상담건수 중 응답자 990명중 50세 이상의 여성들 중 구타상담을 해온 건수는 모두 101건으로 전체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젊은 층 보다 더욱 강하게 이혼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시형, 김창자 두 할머니는 가장 힘든 시대에 태어나 봉건적이며 위압적인 남편의 폭행과 억압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끊임없이 침해당하며 남편의 외도와 정신적 학대까지 받으며 살아왔던 분들이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최저한의 생활비마저 통제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노동으로 모은 재산까지도 남편의 명의로 되었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창자할머니의 경우 아내가 살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었다는 그 최소한의 생활비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으며 상당부분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인정된다. 두 할머니의 이혼소송사건이 재산싸움이 아니냐는 의



혹 아닌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언론은 남성중심적인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단지 50년을 넘게 참고 살아왔으니 그냥 살기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판결은 이미 논리적 설득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노인여성인권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이시형, 김창자 할머니의 이혼소송 사건은 가부장제 사회의 남편의 불편 부당한 권위로 인한 부당 대우와 경제적 속박이 결코 자연스러운 인습이 아니었음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본보기이며 현재 재판부가 이 두 여성에게 강요하고 있는 '결혼의 의무'가 여성과 남성에게 얼마나 형평성 없는 시각에서 내려진 판결인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결과이다. 우리 헌법이 명시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마땅히 이혼에 대한 결정권은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인정받아야 마땅할 인간의 권리이다.

이시형, 김창자 두 할머니는 가장 힘든 시대에 태어나 불건적이며 위압적인 남편의 폭행과 억압, 외도, 정신적 학대로 평생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살아왔던 분들이다. 긴 세월을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인습 속에서 희생당하며 살아온 노인여성들의 인권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여성인권문제 중에서도 가장 소외 되어온 사안이다. 이제 2,000년대를 바라보며 이미 접어든 노령사회를 맞이하여 재판부는 2,000년대에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노인여성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함을 주장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산하 19개 지부는 앞으로 노인여성들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통해 노인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며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촉구함으로써 노인여성인권 보장에 앞장 설 것이다.

## <이시형, 김창자 할머니 이혼 소송 사건 개요>

### 1. 이시형 할머니 사건 개요

- 57년 결혼(재혼), 슬하에 아들1명(기혼, 현재 미국 거주)
- 94년 남편에 의해 아들집으로 쫓겨 남
- 95년 : 1차 이혼소송(변호사 없이 소송제기)
- 97년 5월 : 2차 이혼소송(20억원, 1억원 대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  
-> 9월부터 조배숙 변호사 이혼소송 준비
- 98년 9월 11일 : 서울 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담당판사 : 김선중 부장판사) 기각판결
- 현재 고등법원 항소제기 상태
- 1월 2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 304호 법정 오전10시- 공판일정이 잡혀있다.
- 여성신문사 : 후원구좌 개설
- 서울여성의전화 : 지속 상담 중(황경숙 상담회원), 탄원서 제출 예정.
-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 : 판결문에 문제제기, '참여사회' 기사화 예정.
- 10월 9일(금) 여성신문사에서 (김효선 부장) 한여전에 연대제안.
- 한국여성의전화연합주최 노인여성인권 긴급공청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 19개 지부 서명운동 및 할머니들 돕기 후원구좌 개설

후원금 접수은행 : 서울은행(구좌 번호 : 29501-2095944)

예금주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57년 결혼이후 처음 오현호 할아버지는 결혼 초 무직이었으며 재산이 이백만원이 있다고 전해들었다.(할머니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님). 처음 결혼해서 월세 오천원인 한평반짜리 방에서 살며(먼저 시집에서 할머니에게 200만원상당의 집을 물려주기 전까지) 결혼직후 남편이 일수 빌려준 것이 남자가 하니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당시 오현호씨가 빌려주었던 원금의 많은 부분을 떼이거나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보고 말아 하라고 해 할아버지대신 돈을 받으러 다니며 일수놀이를 시작하였고 이후 할아버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별다른 하는 일이 없었다. 할머니가 일수놀이에 손을 대자 장사가 잘되 돈을 모으기 시작했으나 그때까지도 한평반짜리 월세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먼저 시집에서 낳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 독자이다. 할머니가 재혼한 이후 그 아들을 돌보아 오던 그전 시부모가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 시누이들과 친척들이 부모님들이 물려준 당시 시가 200만원 짜리 집을 아이를 돌보아 살라고 할머니에게 주었다. 그래서 전남편의 자식과 함께 산다는 조건으로 오현호옹과 합의하고 그 집을 물려받아 처분하여 방 2개 짜리 전셋집으로 옮기고 나머지 돈을 일수놀이에 더 투자해 사업을 확장 시켰다. 그러나 남편 오현호옹은 전남편의 아들과 산지 3개월만에 그 아이를 구박하고 내쫓아 할 수 없이 아이



에게 산동네에 월세방을 가까스로 얻어 이후 어렵게(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이가 대학을 졸업 할 때까지 할머니가 번 돈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대어왔고 이후 그 아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져 버렸다.

정당하게 인정받아 마땅한 재산권 이외에도 이시형 할머니가 40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격어온 물리적/정신적 폭력 부분 역시 인정받아야 한다. 본회의 상담을 통한 오현호 할아버지의 이시형 할머니에게 행사한 가정폭력의 부분으로는, 임신 중 힘들어 누워 있을 때 밖에서 돌아와 누워있다고 발길질을 했으며 잠자다가 꿈을 꾸었다고 떡살을 잡고 흔들고 아는 사람이 길가다가 인사를 하면 언제 만났느냐, 보았느냐 하며 들볶고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주먹으로 때리는 등 남편의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자주 내므로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주먹으로 으름질을 당하고 내담자의 몸을 구타해 멍들고 하여 파스를 붙이곤 하였다. 이혼소송 이후에도 문을 망치로 마구 부수 무서워서 문을 열었더니 떡살을 잡고 마당으로 개 끌듯 끌고 나온 적이 있다. 신체적인 학대는 늘 상 있어서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할머니에게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육과 정신적인 학대였다.

정신적 폭력으로는 임신하면 유산시키라고 하여 3번 유산시켰다. 할머니가 맞아서 몸을 다쳐 밥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자신만 밖에 나가 외식을 하고 들어왔고 할머니는 파출부가 올 때까지 운신을 못하여 굶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다. 장모(할머니의 어머니)가 잠시 할머니의 집에서 머무르던 적도 있었는데 남편은 수틀리면 할머니와 장모를 같이 불러다가 끌어앉히고 야단을 치면서 온갖 욕을 다했다. 그 외에도 장소를 불문하고 소리를 지르기가 일수였으며 더욱이 힘들었던 것은 아들이 커서는 아버지가 싫어 밖으로만 나왔던 점이었다.

지금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할머니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무시한 점과 젊은 시절부터 복에 있는 가족들만을 생각하며 할머니와 아들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은 점도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할머니의 재산권 부분도 역시 인정받지 못한 부분으로 그 재산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할아버지의 친가에선 할아버지에게 한푼도 유산을 물려준 것이 없었고 형제들 중 막내에게만 물려주었다. 할머니의 그전 시집에서 아이를 잘 키우라고 할머니에게 물려준 당시 빚이 200만원 상당의 재산은 지금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할머니가 25년간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이자율이 떨어지자 원금이 건지는 대로 모아서 과천에 땅을 다섯 필지를 사서 한 필지는 조카 명의, 두 필지는 할아버지 명의, 두 필지는 할아버지 동생명의로 구입했다. 현재 동교동집터도 할머니가 산 것이다. 할머니가 모은 재산총액은 대략 26억 이상이며 이것은 할아버지는 재산을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할머니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총액이 땅값이 올라 늘어나 실제 부부의 총재산 총액 중 할머니가 형성한 재산총액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오현호 할아버지가 고대에 기증한 재산(등기 이전 전에 가처분 신청)이 바로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부분인 것이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시형 할머니는 1998년 9월 10일 서울가정법원 제3부에서 사건 번호 97드48672번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문에서 보여지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보면

‘(중략)...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이후 사채업을 시작하였는데, 재산이 분명하고 신용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점차 그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으며, 피고는 이와 같이 사채업을 통하여 모은 돈으로 별 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3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사이에 모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가정의 권위를 중시하면서 가정을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하게 꾸짖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전 부 소생의 위 박영대를 위하여 돈을 빼돌릴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경제권도 자신이 쥐고 원고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돈만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그런 대로 견뎌 오다가 나이가 환갑을 지났는데도 피고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고 계속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자, 이에 반발하여 1994. 8. 19일경 집을 나와 피고의 위와 같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의처증 증세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갈등은 피고의 권위적인 태도와 구속에 시달린 원고가 이를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하는 반면 피고는 종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이를 제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일시적인 것일 뿐 원,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는 원,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생활양식 등을 고려할 때 파탄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라고 기술하고 있어 재판부가 전혀 이 소송사건 자체를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채 재판부 스스로가 이시형 할머니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판단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소 불화 하여 현재 별거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일부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 바람에 원고의 감정이 더욱 악화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원, 피고는 이미 40여 년간을 부부로서 생활해 왔고, 피고는 이미 나이가 90살이 넘었고 원고도 나이가 70살이 넘었으며, 특히 피고가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재산을 제외하고도 원, 피고의 여생을 위하여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정도의 재산을 남겨 두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원, 피고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와 같이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 그 판결을 결론 짓고 있다.

이는 재판부가 가정에서 여성의 재산권은커녕 부부의 재산은 부부공동의 소유이다란 사실조차 인정치 않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시형 할머니가 결혼생활 전반을 통해 고통받은 가정폭력부분은 전혀 인정은커녕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칠순을 넘긴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통한 자기회복을 결정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은 평생을 통해 가정폭력을 당해온 인간으로서의 모욕감이었다. 재판부는 이시형 할머니의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마땅히 찾아주어야 한다



## 2. 김창자 할머니 사건개요

- 생년월일 : 1923년 2월 5일생
- 45년 3월 동경실전 여자대학 영문과 졸업.
- 46년 7월 이상현과 결혼. 이후 1남 3녀 출산
- 97년 5월 남편의 폭력으로 가출
- 97년 6월 5일, 16일 남편 이상현씨 부인 김창자 할머니 상대로 절도 고소 (성동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감)
- 97년 6월 12일 남편 이상현 이혼 소송. 남편 측 변호사 (김성권 변호사)
- 98년 6월 이혼소송재기 1심 원고 승소 판결.
- 99년 1월 4일 남편 이상현의 상고로 2심 원고 패소 판결 (서울 고법 민사 10부 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
- 현재 김창자 할머니 이혼소송 담당 최은희 변호사 항소 준비중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창자 할머니 측과 상담.

김창자(현재 76세)할머니는 1923년 2월 5일 함경남도 정평군 신상면 시흥리에서 아버지 김정웅, 어머니 김기연의 무남독녀 외딸로 태어나 일본 동경실전 여자대학 영문과를 졸업(1945년 3월)한 재원이었다.

1946년부터 덕성여자 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친정아버지가 술자리에서 만나 즉석에서 결혼시킬 것을 결심해 현재의 남편 이상현씨와 결혼하게 되었다.(46년 7월 말경) 당시 할머니는 초혼인데 반해 이상현씨는 세 번째 결혼으로 첫 번째 결혼에서 8세 된 아들을 하나 둔 상태였다. 첫 번째 부인은 무식한 촌 여자였기 때문에 이혼하였고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낳다가 아이와 함께 사망하였다. 이후 남편의 강요로 교사 직을 그만 두어야만 했고 결혼 후 6개월 때부터 남편의 폭력과 구타가 시작되었고 이후 남편은 아이들에게까지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렀다. 이후 김창자 할머니의 친정아버지는 이상현씨가 운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도와 주는 등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나 남편 이상현씨는 친정부모님을 방문도 못하게 했다. “재취는 생활비와 경제권을 주면 안 된다.”는 엉뚱한 논리로 거의 생활비를 주지 않아 고생하다 명성여자중학교 영어교사로 다시 취직을 하여 아이들과의 생활을 이어 갔으나 이마저도 남편은 매사에 심한 참견을 하고 때없이 의심하며 학대하고 엉뚱한 말로 김창자 할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결국에는 다시 잡은 직장까지 다니지 못하게 하여 이후 김창자 할머니는 기름장사, 시멘트장사 등을 하여 생활비를 하고 그중 일부를 저축해 쌍림동에 땅을 사 4층 짜리 건물을 올리며 삶의 기쁨을 마련했고 이후 69년 행당동의 104평짜리 집으로 옮겨와서는 집터에서 만화가게, 담배가게, 하숙, 리어카보관소, 기름장사 등을 하며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김창자 할머니가 평생을 노력하여 축적한 재산은 모두 할아버지 명의로 돼있다. 현재 김창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18억원 상당의 재산 중 자신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을 포함해 8억여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김창자 할머니의 경우도 이시형 할머니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혼소송을 내게된 가장 중

요한 이유인 평생을 통해 고통 받아온 가정폭력부분이 재판정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김창자 할머니가 평생 남편 이상현씨로부터 받은 물리적, 정신적 폭력의 정도는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마저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결혼 6개월 쯤부터 계속된 가정폭력과 폭언 이외에도 김창자 할머니가 몸져 누웠을 때조차 병원비는 고사하고 약 한 첩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최근 1998년도에 김창자 할머니가 왼쪽다리 무릎의 인대가 늘어나 울지로 6가 국립의료원에서 수술하여 입원했을 때와 94년 아들집에서 3층 층계에서 넘어져 왼쪽다리 부 상당한 곳에 뼈가 부러지게 되어 쇠판을 넣는 수술을 하였을 때조차 입원비 및 수술비를 주지 않았으며 남편은 수백만원 현금이 매월 임대료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오직 “돈 없다. 밥 할 사람이 없으니 빨리 퇴원 시키라”고 병원의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으름장을 놓기가 일수였습니다. 당시 김창자 할머니는 수술비와 입원비를 빚을 내어 갚아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노후의 삶은 10여 년 전부터 부쩍 심해진 남편의 의처증, 천장, 마루 등지에 돈을 숨겨놓고 찾지 못해 ‘돈 내놓으라’고 시도 때도 없이 다그치는 남편의 폭언, 양말, 사탕까지도 손수 사면서 월 2만5천원으로 생활을 해결하라는 남편의 억지, 옷 벗고 돌아 다니는 등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생활이었다.

할머니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97년 6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아들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이 팔려 잔금 5천3백만원을 그 자리에 있던 할머니가 우연히 손에 넣게됐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할아버지가 절도죄로 고소를 했다가 이혼소송으로 낸 후 다시 이를 취하자 이번엔 그 두 달 후 할머니가 이혼소송을 낸 것.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할아버지의 절도죄 고소가 경찰 당국에 의해 받아 들여 졌었다가 검찰조사에서 풀려난 것이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행동은 우리행정이 얼마나 편향적인 시각을 가졌나를 반증하는 예이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선 할아버지의 가부장적 억압과 국립정신병원이 내린 의처증 진단 등 할머니측 주장이 90% 받아들여져 승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 10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4일 2심에서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결론 지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략)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적게 지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하였고, 그 동안 가부장적인 권위로 원고를 대해 오는 한편 고령이 되어 원고를 이유없이 의심하는 언행을 보인 적은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적게 지급할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절약하는 생활을 하여 현재 약 18억 여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모은 사실, 피고가 원고를 의심하는 언행을 하거나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닌 추태를 부린 것은 고령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인 장애 증상에 기인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원고는 현재 만 75세이고, 피고는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그 동안의 혼인생활기간, 원고와 피고가 혼인할 당시의 가치기준, 남녀관계, 원고는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증상을 나타내는 피고를 돌보고 부양하여야 할 의무 있는 사람이라는 점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원,



하승수 변호사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이혼 청구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결론짓고 있어 재판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할아버지의 생활이 불편 해 질 것이라는 사실은 깊이 숙고하고 있으나 할머니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다분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재판부의 보수성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결국 그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오며 노인이 되어서야 제 삶을 찾고자 하는 한 여성에게만 '결혼의 의무'를 강요하며 법을 내세워 굴종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는 젊고 튼튼한 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재판부는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한 여성의 인권을 돌볼 의무가 있다.

## 1. 이시형 할머니 사건의 경과

### 가. 이시형 할머니의 주장

1심에서 이시형 할머니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시형 할머니는 남편과 1957년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고, 아들 한명을 낳았으나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인 1969. 2. 12.에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남편은 결혼초부터 할머니의 친정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할머니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또한 의처증이 심해서 결혼초부터 외출, 친지방문이 극도로 제한되었고, 외출을 하거나 밤늦게 귀가하면 사유와 행선지를 따져 묻고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다.

그 와중에서 할머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사채업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1992. 3.경부터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성당에 나가려고 하였으나, 남편은 성당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였고, 할머니는 남편의 반대를 피해 통신교리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은 할머니에게 아들집으로 갈 것을 종용하면서 학대를 하였고, 1994. 8.경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학대를 견딜 수 없어 아들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 후 할머니는 아들집과 여동생집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였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한푼 받지 못한 채 생활을 하였다.

할머니는 1995년에 처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6년 2월에 선고된 1심 판결에서 할머니의 청구는 기각당하였다. 그 당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갈등은 피고의 권위적인 태도와 구속에 시달린 원고가 이를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하는 반면 피고는 종전과 다른 태도로 이를 제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일시적인 것일 뿐,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원,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생활양식 등을 고려할 때 파탄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할머니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996. 11.경 항소심에서 재판상화해가 이루어졌다. 화해가 됨에 따라 할머니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남편은 반성문을 쓸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남편은 한달이 걸리든 두달이 걸리든 관계없으니 반성문을 잘 써오라면서 할머니를 집밖으로 내몰았다. 할머니는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쫓겨났고, 다시 별거를 시작하였다. 한편 할아버지는 할머니와는 한마디 상의없이 1997. 5.경 모 대학교에 거의 전재산(36억 상당)을 기부하였다. 현재 할머니는 보증금 1,800만원의 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 나. 1심 판결의 사실인정

1심판결은 대체로 원고인 이시형 할머니에게 불리하게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원심판결은 피고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의 재산이 10억원 존재하여 여생을 위해 충분한 재산을 남겨놓았다고 사실인정을 하였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피고의 혼인계속의사가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도 “피고가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원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하게 꾸짖고 욕설을 하기도 하며, 원고를 의심하여 경제권도 자기가 쥐고 원고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돈만 지급한 사실, 원고의 나이가 환갑을 지났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고 계속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한 사실, 한차례의 이혼소송을 거쳐 재판상 화해를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사이에 감정대립이 계속되어 재결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별거해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 다. 1심판결의 법률판단

1심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이미 40년간을 부부로서 생활해 왔고, 노령인 점, 특히 피고가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기부한 재산을 제외하고서도 원·피고의 여생을 위하여 충분하다고 보이는 정도의 재산을 남겨두고 있다고 보아,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원·피고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 2. 여성노인의 이혼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현행 민법상으로 여성노인의 이혼청구권을 젊은 여성의 이혼청구권과 구별하여 달리 보아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상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여성노인의 이혼청구권에 대해 부당한 제약을 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최근의 법원 판결은 마치 여성노인의 이혼사유 판단은 청·장년 여성의 이혼사유에 대한 판단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해 왔고,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혼을 하지 말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여성노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온다. 가부장적인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심한 인격적 모욕을 받으며 살아온 만큼, 오히려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그 고통은 더욱 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살았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다면, 법이 남편의 인격적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용인하는 셈이 된다. 이것은 양성(兩性)간의 평등한 혼인생활을 헌법상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삼은 것과는 배치된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혼인생활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혼사유의 인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통상 현재의 여성노인 세대는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혼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남편의 비인격적인 대우마저도 참으면

서 혼인생활을 계속해야 했다. 그러다가 비로소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면, 인생의 황혼기마저도 가부장적인 남편아래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여성노인에게 남은 여생만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혼청구를 한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자녀들마저도 부모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그만큼 여성노인들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오랫동안 혼인기간이 계속되었고 노령이라는 것이 이혼사유의 인정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장성한 자녀를 둔 노인의 이혼을 경원시하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노인의 노후를 위해 여성노인의 여생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3. 여성노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검토

이시형 할머니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문제가 된 사건을 보면, 여성노인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의 ‘배우자에 의한 심한 부당한 대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우선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유기란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할머니들이 남편으로부터 내쫓기어서 현재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생활비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남편의 행위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한다. 그리고 ‘심히’란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의 동거생활 계속에 대하여 고통을 느낄 정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경우들은 남편의 계속되는 욕설과 폭행, 학대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경우들이고, 심지어 종교생활의 자유마저 구속당해야 했던 경우들이다. 그렇다면 남편의 행위는 ‘배우자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위 두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항상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심하게 파탄되어서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의 회복의 가망성이 없을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주의할 점은, 혼인계속의 의사유무, 당사자의 유책성(과실)유무, 자의 유무, 자의 상태, 이혼후의 생활보장, 기타 객관적 사정이다.

특히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법원의 주관적인 혼인관에 의해



좌우되어 필요이상으로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경제되어야 한다(김주수, 『주석 친족법』, 173면).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의미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주관적인 혼인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당사자의 유책성 유무', '이혼후의 생활보장' 등의 인정에 있어서는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법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아닌 이상, 혼인관계의 파탄이 인정되면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아닌 사안에서, 그리고 젊은 여성이라면 충분히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유독 여성노인에 대해서만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성노인으로 하여금 남은 여생마저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4. 여성노인의 이혼청구와 여성노인의 인권

여성노인의 이혼청구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성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결혼초부터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사회분위기와 남편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억눌려 평생 큰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한 여성노인들이 남은 여생이나마 남편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여성노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고통받던 여성노인들이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사법부의 법해석론이 진취적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인권문제에 둔감해서는 안된다. 최근 여성노인들의 이혼청구를 잇따라 기각한 판결에 따르면, 여성노인들은 사망할 때까지 원하지 않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비인격적인 대우마저도 감내해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온다. 그리고 자신이 기여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 전혀 향유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가져온다. 이러한 결론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 5. 결 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성노인의 이혼청구문제는 여성인권의 문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최근의 논의는 여성노인이 고령의 남성노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가란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여성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옹호할 것이냐, 아니면 이들의 남은 여생마저도 비인격적인 대우와 모멸감속에서 보내게 할 것인가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지 않은가.

#### 1. 결혼생활

1923년생으로 1915년생 이상현할아버지와 1946년 결혼하였다. 당시 할아버지는 3번째결혼으로 첫부인소생의10살난 아들이 있었으나 할머니는 초혼으로 사정을 모르고 결혼하였다.

할머니는 함경남도 출생으로 일본에서 지센여전 영문학과를 졸업후 해방으로 귀국하여 미 군정청학무국에서 근무하다가 덕성여중교사로 발령이 나 재직중 결혼한 것이나 남편은 여자가 나다니는 꼴을 못본다면서 교장시로 찾아가할머니의 사직을 강요하여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6.25후에도 잠시 명성여중에서 교편을잡을 기회가 있었으나 이역시 남편의 극심한 행패와 학대로 얼마 계속하지 못했다.

그후 미군부대 기름장수에서 쌀장사 하숙 리어카보관소 인삼차집 담배가게 만화가게등 생활을 위하여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3녀 1남을 낳아 키웠다.

할아버지는 본래 트럭운전일을하다 할머니와 쌀장사를 하다가 복덕방을하기도하고 하여 수입이 있었으나 후처에게는 경제권을주지않는다는 원칙으로 생활비는 할머니가 벌어서라는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혹시나 친절으로 돈을 빼돌리지 않나 항상의심을 하여 심지어 친절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도 거적대기로 덮어 장사를 치르도록하는 것이었다.

#### 2. 이혼소송제기 경위와 이혼청구사유

그런대로 할머니가 가게라도 하며 생활비를 벌때는 그런대로 견디어왔으나 할아버지가 집을 짓겠다고하면서 할머니가 하시던 만화가게를 못하도록만화책을 처분하고 아파트로 이사온후로는남편은 월400여만원의 집세를 움켜쥐고 쌀과 김치거리를 직접 사주는 대신 월2만원만을 생활비로주고 갱활하라는 것이어서 할머니는 고통이 극심했다

무엇보다 괴로운것은 무릎뼈가 부러져서 입원을해도 병원비를 주지않아 자식들에게 기대는게 고통스럽고 또 아직 제대로 기동을 못하는데도 밥하러면서 강제로 퇴원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한번은 남편이생활비를 월20만원을 주겠다고 자식들앞에서 각서를 썼던일이 있어 혹시나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는일이었다

그외에도 특하면 자식들이 내새끼가 아니라는 것이어서 의심스러우면 친자확인이라도 해보라고해도 뚜렷한 근거도없이 할머니를 양갈보,도둑년 하는 것인데 점점 그정도가 심해져서 자식들과 함께 진찰이라도 받아보자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남편은 진찰도중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와



먼저 집에와있던 막내딸을 얼굴이 우그러지도록 두드려패서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막내딸얼굴을 보고는 무서워 들어 가지 못하고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되었다. 할머니는 며칠전 복덕방에서 할아버지가 아들명의로 해둔집이 팔려 매수인이 잔금을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주어 받아서은행에 넣어두었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집을 나가자 이혼소송을 내고 절도죄로2번이나 고소를했다

할머니로서는 할아버지가 이와같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않아 노년의 질병의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고 의처증의 정도가 점점심해져 심지어 할머니가 전처소생아들과 불륜관계였다는정도로까지 의심하는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및 더이상혼인생활 계속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 3. 1심재판의 경과와 결과

생 략

### 4. 2심판결의 부당성

헌법상기본권인 법앞의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이혼사유를 부당하게 차별적용 하였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 한국 여성노인의 삶과 생활주기향상

한국노인의전화 상임이사 서혜경

### I. 여성노인의 현황과 문제

#### 1. 노인인구현황

본격적인 노인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98년 현재 3백5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6.6%에서 2000년에는 330만으로 전체인구의 7.0%가 될 것이며, 2022년에 가면 14.3%가 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다. 노인 가운데 남녀의 비율은 약 40대 60으로 여성노인의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 여성노인인구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늘고만 있는데 과연 우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성노인에 대한 더 큰 관심은 고령층 대부분이 여성이며 남성보다 약 6년-8년이상 평균수명이 높고 대부분의 여성이 자기보다 35년 이상이나 나이가 많은 남성들과 결혼한다고 볼 때 여성이 배우자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9~12년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호가 많이 필요한 80세 이상 노인중에 2/3가 여성노인이라는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심각한 여성노인의 문제라 하겠다.

#### 2. 고령화 사회와 여성

노인문제는 여성의 노후문제라고 말해지게 된 것은 최근 23년 전쯤 일이다. 고령화 사회 혹은 고령사회에 있어서 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여성고령인구의 문제인 것과 남자와 여자는 노후에 직면하는 문제와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오랫동안 많은 논자에 의해서 잊혀져 왔다.

여성노인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여성이라는 성과 노인이라는 연령의 두가지 주요변수는 다시 말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은 가부장적 체도의 남성우월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과 평균수명이 남성노인보다 길므로 전반적인 인생의 측면에서 볼 때 남성에 비해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하에 남성중심의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노인문제의 특수성과 그 핵심들이 우선 파악되어야 하며 그 토대 위에 여성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문제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세기 고령여성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은 명약관화하게 드러날 것이다. 홀로 살아가는 빈곤하고 고독한 고령여성이 대량으로 생겨나고 또 수발할 인력도 없는 신변자립이 안되는(신체적 부자유자나 치매에 의한) 단독세대도 대량으로 속출할 것이다. 이 문제는 수적으로 남성의 3배 정도의 빈도로 여성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더욱이 노인부부세대에서는 남편의 개호에 지친 고령여성이 속출할 것이고 보다 수는 적더라도 여성이 개호받는 측이 되는 경우도 포함해서 수적으로 수배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전망은 특히 여성에게 드리워지고 있는 어두운 그 어떤 것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보는 작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 성차별과 연령차별

여성을 종속적인 지위에 올려놓고 노인문제중에서 여성문제가 잊혀져 온 것은 의도적이었던 아니건 사회의 중추를 장악하여 온 남성측에 여성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성차별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여성문제중에서 노인문제를 보이지 않게 한 것은 젊음에 가치를 두는 현대산업사회가 낳은 연령차별의식이다. 즉 여성의 노후문제는 성차별과 연령차별이라는 2중의 차별에 의해서 태어난 문제로서 자리매겨지는 것이다.

### (2) 여성인구의 고령화와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

여성의 노후를 생각할 때는 집체로서의 문제와 개체로서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집체로서의 문제란 여성인구의 고령화가 자아내는 사회적 부양부담, 수발부담의 증대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의 속도는 구미의 3배 내지 4배이지만 유독 여성인구의 고령화는 현저하다. 개체로서의 문제란 수명의 연장과 출생자 감소에 의해서 가져와지는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가 자아내는 문제이다. 노년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립성을 결여한 현재의 고령여성은 이 기간을 빈곤과 고독에서 지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여성의 의존성, 여성의 노후문제는 가부장적 성별분업사회에 있어서 이미 유아기부터 그 싹이 있다고 말하여도 좋을 것이다.

#### ① 여성인구의 고령화

1994년 여자 노인 100명당 남자노인 65.8명으로 여성 노인의 수가 남성 노인의 수보다 1.7배나 많으며, 이러한 추세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노인인구 특히 최고령의 여성인구는 압도적으로 많을 전망이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자기 배우자를 잃게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남성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얼마 안되어 재혼을 하거나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는데 이러한 행동

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있다. 여성들은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보다 장기간 독신상태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60세 이상 노인남성중 홀아비의 비율은 5분의 1미만이다. 이와는 달리 60세 이상 노인여성중 40~60%가 미망인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는 남성들이 여성의 경우보다 비율이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매우 오랜기간에 걸쳐 이런 현상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계속되어 왔다.

### ② 라이프사이클의 변화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는 수명의 연장과 출생아수의 감소에 의하여 가져와 진다. 전쟁 전에는 남녀가 같이 50세를 넘기는 일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전후에 급격히 신장하였다. 유독 여성의 평균수명의 신장은 현저하여 1960년에는 54세를 넘고 70년에는 67세를 넘어 지금은 78세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평균수명이 60세를 넘은 것은 1970년대, 지금 1998년 약 70세로 평균수명이 10년씩 늘어나는 데에 여성의 2배에 해당하는(20여년)을 요하였다.

세대별로 본 라이프사이클의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자녀출가 이후의 기간이 신장해 오고 있는 것이다. 노년기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보다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된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처럼 노년기의 삶이 길어지면서 자식과 살지 않는 노부부세대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다. 우리나라 노부부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주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후기 산업화와 핵가족화 및 개인주의 등장으로 부부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유배우자율은 1995년 남성노인 62.8%, 여성노인 36.8%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 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의 유배우자율이 약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수발(개호)하고 수발을 받는 존재로서의 여성

3세대의 비율의 저하와 노인부부만의 세대나 혼자 사는 세대비율의 증가는 가정내에서 주수발자나 부수발자가 없는 가족의 증가를 의미하고 그러한 가족에 대한 공적지원기구, 즉 지원기관과 지역단위의 건강보호활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가정에서 수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여성이고 거기에 보건소, 병원, 노인시설 등에서 직접 병든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은 여성이다. 따라서 수발(개호)을 들고 있는 여성의 건강은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수발의 객체인 고령후기의 여성이 증대하는 21세기 고령사회에 있어서도 만일 여성에게 수발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수발받는 측의 양적인 증대와 수발하는 측의 질(의식)적인 변화에 주목한다.



### 3. 여성노인의 문제

성별 분업사회에 있어서 형성되는 여성의 낮은 경제력과 약한 자립심이 집약적으로 현재화하는 것이 노년기이고 그 원인은 유아기부터의 사회화의 과정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년기에 있어서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나 여성인구의 고령화가 자아내는 문제의 모두를 커버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다각적인 노인문제를 여성학적인 시각으로 추려보겠다.

#### (1) 노후의 경제문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이 자식의 도움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여성노인에게에는 경제적 불안정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이다. 여성이 노후의 빈곤에 빠지기 쉬운 이유로는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근로수입을 계산의 기초로 하여 연금을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숙련의 저임금분야에서 일해온 여성의 급여액이 낮은 것, 육아기간의 직업중단이 연금급여에서는 불리하게 된다는 것, 그나마 기업연금이 있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이 적다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것도 지금의 여성노인에게에는 기업연금이나 저축도 없고 공적연금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현 노인에게 주어지는 공적연금은 그나마 올해부터 저소득층에게 실시되고 있는 경로연금 35만원이 전부이다. 앞으로는 자식과의 동거도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에 여성노인 단독세대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노후에 빈곤을 면하기가 어렵게 된다.

오늘날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성차별에 더해서 연령차별의 벽이 두터운데 남성에 대해서는 50대에도 재취업의 기회가 가능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30세가 넘으면 고용조건이 악화되고 50세가 되면 취업의 기회는 거의 절망적이다. 여성의 노후의 궁핍상은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탄생시킨 것이고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에 이어 연령차별의 철폐가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21세기를 향하여 남편에 의지하지 않고 개체로서의 여성노후의 삶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최대 과제로 삼아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실현되고 사회보장에도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

#### (2) 노후의 가족문제

불과 20년 전만해도 은퇴를 앞둔 성인의 90.0% 정도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그 비율은 절반을 겨우 넘고 장노년층 중 극소수만이 자녀를 노후의 주된 부양공급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자녀와 별거하여 생활하는 노인이 전체 노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0%로 나타나

1988년 24.0%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자녀와 별거노인이 54.0%(독신노인 15.0%와 부부노인 39.0%)로 절반 이상의 노인이 자녀와 따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가구율을 보면 60세 이상 전체 인구의 1/4이 단독가구인데 이중 여성노인이 8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후의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혼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노후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후의 부부관계'임을 볼 때 이들의 행복만들기에 많은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 (3) 노후의 사회문제

일반적으로 남성노인의 역할상실감은 주로 직장생활로부터의 퇴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는 퇴직보다는 가정내에서의 가사와 양육 등에 관한 역할과 지위가 상실되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느끼는 소외감과 고독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습적인 사회경제적 차별이라는 굴레 외에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인식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여성노인들은 젊은 여성이나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문맹율이 높고 계산에 약하고 제도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비록 비공식분야에 취업하기도 하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대처해 나갈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사회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은 사회적 지위도 함께 잃게 된다. 교육수준이나 사회화경험이 더욱 낮아 세대간의 갈등과 고립을 갖기 쉬우므로 학습활동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한 세대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여성노인들의 사회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를 갈등이나 불안으로 느끼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의 소집단 모임에서부터 시작하여 좀 큰 집단으로서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노인건강문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고 있지만 보건정책은 종종 폐경기 이후에는 남녀간의 징후가 거의 같아진다고 하는 가정때문인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별 보건통계는 거의 없다. 노후의 여성건강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여성에 관한 건강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과거에는 여성건강을 주로 산전간호나 임신과 분만 등 산부인과 영역을 의미하였으나 이제는 그 개념의 범위가 여성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생활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하여 발생하는 위기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인생 후기의 건강문제는 출생 이전부터 시작된다. 임신 기간동안의 어머니와 신생아의 영양실조는 장년기 이후에도 많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성인시절에 앓았던 각종 질병은 노년기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성인의 건강을 개선시켜 주는 한 요인으로서 유년시절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여성 노인들이 오랜 기간동안의 무관심, 차별, 임신과 출산의 고통 등에 기인한 만성적인 건강문제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 여성의 잦은 발병 또는 장애를 유발하는 신체적 특성도 일생동안의 차별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성노인의 대부분은 배우자 없이 빈곤과 싸워가며 급·성인병과 신체적 장애를 지닌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한다. 신체적 장애 못지않게 중요한 정신적 문제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인구의 15.0~25.0%가 정신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등의 정신병리가 중상류층 보다는 하류층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발생률이 높으며 특히 노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노인성 치매, 갱년기 우울증 등과 같은 특수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여성에게서 더 큰 문제이다.

또한 고독감, 생애상실, 불안감, 정신적 갈등 등은 질병에 의한 고통, 죽음의 불안 등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남녀, 가족구성을 불문하고 노인이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와 사별에 의한 고독감이나 신변자립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불안, 급병으로 쓰러져서 혼자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등은 여성이 보다 심각하게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생활보호에 해당할만한 최저한도의 보장이 제시되지 않는 한 고령여성의 불안은 계속된다. 또한 21세기의 고령여성(특히 후기)의 최대의 문제가 되는 것은 남편의 간호의 과중부담과 자신의 신체부자유에 대한 불안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만성적이고 퇴행성질환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성별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상태는 여성노인이 53.7%, 남성노인이 43.4%로서 여성노인이 약 10.0% 이상 더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노인들은 출산기능과 관련된 건강문제들, 유방암, 자궁암, 요도질환과 관절염, 신경증, 고혈압, 중풍, 당뇨병, 등의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 시력장애 등은 남성보다도 더 경험한다. 특히 골다공증은 30~35세 사이에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여 65~70세 사이에는 뼈속의 무기질 함유량의 감소로 뼈골질의 위험이 증가하고 노년기에 엉덩이 골절의 80.0% 이상이 여성에게서 일어난다.

폐경에 따른 내분비양의 변화는 심장질환의 발병 증대, 골다공증, 고령화와 관련된 피부, 근육, 기타 조직 변화의 가속화 등을 가져온다. 치매노인의 비율도 남성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과 예방의학의 보급은 와상노인이나 치매의 출현률을 저하시킬는지 모르지만 후기노인층 특히 수명이 긴 여성노인인구의 증가가 현저한 21세기에는 비록 비율이 저하한다 하더라도 절대수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4. 여성노인의 생활향상을 위한 방안

이처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상당히 소극적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총론적으로 여성노인들의 수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전반에 걸친 건의사항을 다루고 각론으로는 여성노인 생활주기에 항상 따른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여성의 노후보장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상하든지 기본적인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1982년 고령화에 대한 비엔나 국제행동계획을 중심으로).

##### 1) 여성보건 및 영양에 역점을 둔 신체장애 및 질병예방

- 여성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 전국보건소에 와상노인상담신고센터 확대설치하고 상담전문요원 양성
- 노인수발(개호)수당제도 도입
-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문제에 대하여 약물치료 및 수술보다는 예방에 역점을 둔 보건서비스의 재정립을 촉진
- 각 연령계층과 성별에 맞는 각종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촉진
- 노인건강 및 영양의 요구도에 중점을 둔 보건관리와 보건정책 개선

##### 2)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제 근로, 고정관념타파 그리고 기타 사회참여, 장애요인의 극복

- 여성노인자원봉사자 개발
- 여성노인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도입 등

##### 3) 경제안정에 주안점을 둔 사회보장, 물질적 혜택, 고용기회 및 그 가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

- 저소득층 여성노인의 생계보장을 위해 생계보호비를 늘리는 한편 경로연금의 대상과 지급액을 점차적으로 확대: 경로연금 대상자를 전체노인의 30%인 92만명까지



## 조기 확대실시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질적인 역할확대 및 운영

### 4) 주택공급, 환경, 소비자 보호, 조사연구 및 교육

### 5) 경제적 수입, 가족과 사회의 지원 및 자립정신의 확대를 통하여 식수, 주거, 의료, 사회적, 법률적 서비스 및 보건관리에 대한 수혜 증진

- 노인용 보장구의 의료보험 적용(보청기 구입과 틀니장착도 의료보험 급여 적용)

### 6) 노동 및 퇴직 시기와 방법의 결정에 참여할 기회 보장

- 노인의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독립적인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고용과 퇴직자 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 7) 능력에 따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

### 8) 노인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노인들의 기술과 관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및 젊은 세대와의 지식공유, 그리고 친목 단체의 결성을 지원

- 고령화사회와 젊은 층 인구의 증가가 세대간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필요
- 노인의 욕구에 관심을 둔 세대간의 평등과 고령층을 위한 경제, 사회 보장제도의 개발
- 지역사회에서 자립, 상호협력, 타인 구호활동 증진을 위한 노인들의 참여 및 시민 사회의 역할 강화
-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9) 적절한 시설보호가 이루어지고, 보호시설 수용시에는 품위, 신념, 사생활 및 자기 주변에 대한 결정권을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다양한 노인복지시설확충

### 10) 품위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며 연령, 성별, 인종, 신체장애 및 경제적 상태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 노인을 포함한 최고령자층의 기본권, 존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장치
- 노인에게 대한 폭력 및 차별의 근절
- 고령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영향

\* 98년 대한가족계획협회 주최 세계인구현황보고서 세미나 내용의 일부 발췌

## II. 상담사례를 통해 본 노부부관계

노년기는 자신의 생을 조망해보고 자신의 현재 위치나 과거를 통합하며 스스로 남은 생을 의미있게 살아가는 시기이다. 그러나 한국노인의 전화에 걸려오는 노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배우자의 괴팍한 성격, 경제적으로 무능력, 외도, 의처, 의무증, 성격차이, 폭행 등으로 인한 갈등 더 나아가 이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노부부 관계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노후의 이혼문제가 생소하긴 하지만 노후라 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노인의 욕구가 증가하는 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나라는 주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운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 꼭 이혼하려고 하는 노인의 경우는 결코 순각적이지도 단순하지도 않은 긴 세월동안의 장기적이고 처절한 결정인 것이다. 얼마남지 않은 삶이나마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욕구와 더불어 사실적인 별거상태를 법률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새출발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바람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가출, 장기 별거 등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법률적인 관계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정리하려는 여성노인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68세의 한많은 여성노인의 삶, '외도와 별거 아닌 별거'

저는 1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이 막내예요 남편은 30대부터 한동안 나가서 탄살림 차리고 그 당시에 외도도 하고 간혹 들어는 왔으나 상당 기간 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시다. 아들이 군에 입대 후(4년전) 군대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선배군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가슴이 부어 있는 등 부모로서는 도저히 방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제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에 귀가 솔깃했고, 더구나 남편이 나가서 몇 년 동안 오지도 않고 그전에도 결코 좋은 인간이 아니었기에 죽었나 하고 있었을 때라 사망 신고를 내고 아들을 제대시켰어요 그런데 7개월쯤 전에 남편이 돌아왔고, 잠수함 간첩사건 때 남편이 외출했다가 불시검문을 받았는데 주민등록상 사망으로 되어 있어서 발각이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살 생각은 꿈에도 없습시다.

### 2. '시아머니의 긴 간병이 불러일으킨 부부의 갈등'

저는 대학 신입생이예요 저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한테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니까 20년이 넘었죠. 할머니는 성격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어머니와 별 문제없이 어머니가 가끔 가슴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짜증이 난다 하시며 말도 잘 안고 웃지도 않고 지내는 날이 많았어요 몇달 전부터 증세가 심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군요 식구들이 어머니에게 관심을 갖고, 저 역시 어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할머니를 더 이상 모시지 못하겠다는 거죠 저의 큰 아버지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 입도 일정치 않은데다 전세방을 전전하며 사시는 형편이라 할머니를 모실 입장이 못되는데 어머 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므로 추석을 지낸후 할머니는 큰아버지 댁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면 할머니는 자신의 방도 없을 뿐 아니라 주인집 눈치도 봐야 하고 가기 싫어하셨는데 가신지 한달 도 못되어 화장실에 가던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다쳤다고 화를 내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지난 20년 세월동안 집안의 대소사며 명 절, 제사 등을 들켜 며느리인 자신이 해 왔으며 이제는 해방 될 대도 되지 않았는가 하며 따지 셨어요 급기야 두분은 이혼까지 들먹이고 갈수록 사태는 악화되는데 이것은 어머니 병에 별 도 움이 되지 않아요 고모들이 있지만 집안 일에 간섭만 하시고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노인의 전화를 알게 되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3.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호소하는 65세의 남성노인

나는 마누라와 같이 살수가 없소. 결혼한지 40년, 단맛쓴맛 다보고 난 지금에 와서 참고 살려 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못 참겠소 무슨 방법이 없겠는지요 나는 사남매를 두었습니다. 이남사 녀죠. 그들을 결혼시켜 잘 살아 보려 했는데 7년 전부터 식사도 각자하고 방도 각방을 사용하며 대화도 없었습니다. 마누라는 62세, 나는 65세 입니다. 젊어서도 성격차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 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하나, 둘 낳고 지나다보니 법이 무서웠든, 조강지처를 팔시할 수 없고 무 덤덤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더욱 악화된 것은 내가 퇴직하면서 탄 연금을 조카에게 일부 빌 려 주었지요. 빌려주지 말라는 마누라의 권유도 거절하고 빌려준 나의 처사에 조카는 약속을 어 기고 말았습니다. 싸움 싸우듯 하면서 일부는 받아 냈지만 나머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부부싸 움은 잦아졌고 장벽은 굳어 갔습니다. 반발심이 부추기는 대로 밖으로 나다니면서 딴 여자를 보 며 외도를 했습니다. 재미도 보고 허황된 생각으로 세월을 보내고 나니 참된 생활은 멍들고 남 는 것이 없어요 애꿎은 재물만 날리게되고 몸도 마음도 황폐해 졌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 내와 자식에게 충실하려고 했으나 본심을 몰라주고 반겨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살림을 차리려고 하지만 아내가 버젓이 있으니 누가 나랑 같이 살겠습 니까?

### 4. 긴별거로 인한 이혼갈등

아내가 7년 전부터 일방적으로 각방을 쓰고 있다. 대화도 안하니 답답해서 못 살겠다. 헤어지 고 싶는데 7년간 별거가 이혼사유가 되는 지 알고 싶다.

### 5. 언어학대까지 하는 이기적인 남편과의 성격차이

63세 된 송파구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현재 장남아들부부와 살고 있는데 남편이 풍을 맞아 온 갖 고생을 다하고 가진 돈마저 거의 다 탕진했다. 요즘 심장이 좋지 않다고 하니 수술을 꼭 받 으시겠다고 한다. 수술해도 반반이라고 해도 굳이 하시겠다 하니 난 자식보기가 미안하고 수술 하지 않고 어서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저 꼴로 더 오래 살려고 하니 그만큼 재산 축 냈으면 됐 지 그것도 모자라 바닥을 보자고 하니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한다. 원래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이고 파소였다. 언어학대가 심하고 말끝마다 비꼬는게 사람을 괴롭힌다. 그래도 큰 소 리 안낼려고 부단히 참으면서 살아왔다. 큰딸이 오죽하면 즈이애비 같은 사람 만날까봐 시집가 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이겠는가? 도대체 제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 6. 68세의 남성노인, 부인과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호소

저는 올해 예순여덟의 남자로 2남2녀의 자식들을 모두 성혼시키고 예순넷의 아내와 살고 있 습니다. 그런데 양순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저와는 달리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의 아내 와는 결혼 초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의 낭비벽으로 인해 살던 주택에서 쫓겨나 연립에서 살게된 이후는 사이가 나빠져 각방을 쓰고 있으며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있습 니다. 또 생활비조차도 밥상 위에 놓아둬 전하고 집안에서는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꼭 필요한 대화는 메모에 의해 교환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현재 제가 다니는 직 장을 그만두고 나면 혼자라도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 마음 편하게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언 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는지-- 또 이 상태로 끝까지 지내야 하는지요?

### 7. 남편의 습관성 의도로 인한 파경

전 2남2녀 모두 출가시킨 66세 된 할미입니다. 지금 큰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70세 된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낮에만 밖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그 여자와 찍은 사진도 봤습니다. 여자를 우습게 보는 남편밑에 숨조리고 살아온 긴 세월을 돌이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 버릇 개 못주고 바람을 피우니 너무나 속상합니다. 질투심은 이미 오래 전 에 없어지고 다만 집세를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20만원 용돈도 적다고 저러니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돈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바람을 피던지 들어오던지 말던지-- 뼈빠지게 벌여 놓은 우 리 돈 가져다가 여자한테 쓰는 꼴은 정말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른지요?

### 8. 무능력한 남편과 살다지친 62세된 여성노인의 갈등

2남1녀를 둔 62세 된 박입니다. 큰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척당하고 현재는 시누이댁에 있는데



작은아들이나 딸은 부모가 대접받게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괘시를 받는다고 하지만 나 자신은 자식들에게 잘해주었으면 잘해주었지 못해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전혀 보탬이 되지 못했던 무능력자였습니다. 현재 집이 없어 임대주택을 임대받으려고 하니 자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영감과 이혼판결을 받아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집한칸 마련해야 하는지? 아님 이 기회에 남편과 이혼을 아예 해버리든지, 평생 남은 인생을 남편 뒷치닥거리 한다는 것도, 또 자식에게 대접 못받고 사는 것도 다 싫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9. 77세 된 남성노인의 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

저는 2남 2녀를 잘 키워 다 출가를 시켰습니다. 모두 성공했지요. 그런데 2년 전에 대장암, 간암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내와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 아내는 너무 착해요 내가 혹시 아내를 두고 죽을 경우 아내에게 돌아 올 불행(사고, 간병 등)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 놓고 가야할지 걱정이 되서 상담을 왔습니다. 시설에 보낼 수도 없고, 내 아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 III. A씨(75세)가 52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 B씨(82세)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패소 판에 관하여

#### 1. 황혼이혼의 판결에 대한 나의 견해

이 경우엔 법의 잣대가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립적인 시각에서의 판결은 아니었다고 본다.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이중잣대의 결과물이다.

이는 판결을 내린 사람이 여성도 아니었고 노인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일깨우게 해주며 따라서 두가지 분명한 사실, 이 여성노인이 이렇게 이혼이라는 극단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52년간의 한의 덩어리를 짐작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노인에게도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 이 판결의 객관성을 의심케 한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칠순할머니가 90세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패소건이 있었다. 재판부는 칠순할머니의 그 힘겨운 삶을 헤아리기보다는 장학금 기부라는 90세 남편의 큰뜻(?)에 손을 들어준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 2. 20-30대 이혼과 50대 이상의 노인들의 이혼은 다른가?

나이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이혼의 사유는 외도, 바람기, 가정에 대한 무관심, 성격차이 등으로 나타난다. 다만 노년이혼의 경우는 80%가 여성에 의해 제기되며 대부분이 자식이 다 출가를 한 이후에(정년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혼에 대해 다시 재고할 여지가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십년동안 일방적으로 한쪽(여성)이 참아왔다는 것이고 더 이상 그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 막바지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이들과는 달리 이들에게 새 인생이란 하루라도 마음편히, 인간답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지, 좋은 사람을 만나 새 가정을 다시 꾸려보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이혼후의 삶은 아니다. 이들에게는 남은 인생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의 의미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최후의 울부짖음이다.

### 3. 황혼의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수치의 의미는?

1996년 통계청에 의하면 결혼후 5-10년내 이혼비율은 지난 86년 31%에서 지난 95년 24%로 줄었는 반면, 결혼후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4.5%에서 9.1%로 늘었다. 그러나 노년부부의 파경은 호적상 이혼보다 별거 등 파경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앞으로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노인의 전화의 경우도 95-98년동안 노년기의 가족관련 상담중에 노부부관계에 관한 상담을 보면 95년 15%에서 98년 25%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까지 심각하게 고려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 4. 황혼의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사회의 대응책은? 고령화 사회와의 관계는?

노인의 문제는 노년기에 들어서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이 긴 세월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다. 신체적으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허약할때 뭉쳐진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그 심각성이 확연하게 들어나는 것이 노인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97년 5월 3천명을 대상으로 한 마이니치의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본남성들은 나이가 든 뒤에도 아내와 함께 지내기를 원했으나 여성들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일본남성 66%는 노후를 아내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답한 반면 남편과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비율은 31%였다. 같은 조사를 우리나라에서 했더라면 더욱 낮은 비율의 여성도



인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이는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긴 세월동안 여성을 경시하고 가족위에서 군림했던 가부장적 문화가 이제 남성의 발목을 잡는 업보로 되돌아 오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전망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고령시대의 사회안정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평등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가부장적 삶속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아 이런 부조화가 부부의 갈등과 이혼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차기노인들은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잘해요, 늙어서 구박받지 않으려면' 이라고 하는 아내의 이쁜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아니면 머리털근 백발의 남성노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조강지처가 아니라 조강지부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자녀 출가후 노부부만 지내는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노후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바로 노부부관계이다. 원만한 부부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동안 서로를 위해 아껴주고 이해해 줄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98년 10월에 열린 한국노년학회 학술대회에서 60세 이상 19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부관계가 민주화되어야 황혼의 우울이 덜 찾아온다는 결과의 한 본문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오늘의 삶이 내일로 이어지는 만큼 젊을 때부터 부부관계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바람직한 노부부관계를 위해 우선 부부끼리 즐겁게 더불어 사는 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행복한 노후 만들기의 제 1 조건이 된다.

(\* 경향신문 기고내용 발췌)

## 인권을 유린하는 법의 판결

이영자(가톨릭대학, 사회학)

이시형, 김창자씨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내용은 우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법조계를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처사일 뿐이다. 그 이유는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법조인이 오히려 인권을 유린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청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의 심각성을 문제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핵심은 판결내용이 원고들의 인권이 몇 십년동안 유린되어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결혼이 파탄상태에 이르러 버렸다고 보지 않고 결혼생활을 지속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에 있다. 결혼생활을 지속하라는 것은 원고에게 수명을 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삶을 감내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 판결문에서는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들을 고려해 볼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만일 이 가치기준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반인권적 처사를 당연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판결은 바로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한 마디로 판결내용은 인권발전에 기여해야 할 법조계가 거꾸로 인권퇴보에 앞장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다. 법의 판결이 결혼생활에서 여성이 인권을 유린당해온 삶을 합법화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과연 법에 호소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의 판결에 담겨진 결혼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결혼은 분명 쌍방의 합의와 상호존중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한쪽이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해온 결과 결혼을 지속할 의지와 인내력이 고갈된 상태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어떻게 결혼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이 소송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갈등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수 십년동안 누적되어 온 것임이 잘 드러나고 있고 이를 판결문에서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나이나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결혼의 파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 판결이 의거하는 결혼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남편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비인간적 대우에 따른 아내의 희생과 고통이 수 십년 지속되었다면 이제라도 이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결혼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키는 것이지 그 반대로 가는 것은 결국 결혼을 모독하는 것이다. 남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평생동안 아내를 의처증과 학대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자신의 정신적 건강과 인간적 삶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여생이나마 부부가 서로의 인격을 파괴한 과거를 벗어나서 각자 정상적인 자아회복과 자기존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백년해로'라는



미명아래 비극적인 부부관계를 법의 강요로 지속시키고, 또한 이것이 우리 사회의 결혼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자부한다면, 이는 인간의 삶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되고 그 가치판단이 왜곡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의 이혼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여성이 아니라 만약 남성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을까 의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번 판결은 분명 남성중심적인 가치판단을 내포한 것이며 기존의 결혼제도속에서 여성이 감내해온 가부장적 억압의 실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앞으로 이런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혼문제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의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 시각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결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노후에 병든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아내는 마치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노예'의 삶을 무조건 감내하는 것이 여성의 도리인 것처럼 미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평생동안 학대해온 사실은 백 번 더 부도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편을 끝까지 떠나지 말 것을 강요하는 것은 결혼의 형식논리와 가족의 체면때문에 부부가 자학과 가학의 병적인 상황에서 일생을 마치게 하는 비인간적 처사라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가 결혼 그 자체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파괴시켜온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혼은 결혼을 결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이혼소송의 경우들처럼 오랜동안 결혼을 파괴로 이끌어온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파괴되어온 인간의 삶을 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여성들의 이기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여성계가 이혼을 여성문제의 해결책으로 선호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반여성적 견해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소록

### ■본 부

- 사 무/ 02-2269-2962-4 • 상 담/ 02-2263-6464-5 • 팩 스/ 02-2269-2966
- 주 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5-6 금강빌딩 2층 202호 (100-391)

### ■서 울

- 사 무/ 02-2272-2161-4 • 상 담/ 02-2263-6464-5 • 팩 스/ 02-2272-2190
- 주 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100-391)

### ■인 천

- 사 무/ 032-527-0090~3 • 상 담/ 032-529-2545,504-3405
- 팩 스/ 032-527-0093
-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575-23 종로빌딩 2층 (403-132)

### ■수 원

- 사 무/ 0331-232-7780 • 상 담/ 0331-232-6888 • 팩 스/ 0331-238-7780
-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6-10 3층 (442-070)

### ■성 남

- 사 무/ 0342-751-2050 • 상 담/ 0342-751-6677 • 성폭력상담/ 0342-751-1120
- 팩 스/ 0342-751-2051
- 주 소/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310-45 대왕빌딩 7층 (462-130)

■성남여전부실 일하는 여성의 집: • 사 무/ 0342-751-3700 • 구인구직상담/ 0342-751-5599

### ■강 화

- 사 무/ 032-934-1903 • 상 담/ 032-934-1900 • 팩 스/ 032-934-1902
-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읍 관창리 509번지 백합사 2층 (417-800)

### ■안 양

- 사 무/ 0343-383-6808, 383-6115 • 상 담/ 0343-387-5734
- 팩 스/ 0343-383-6115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비산3동 1034-14호 필산부인과 지하 (431-053)

### ■시 흥

- 사 무/ 032-692-4700 • 상 담/ 032-692-9100,0345-432-6660 • 팩 스/ 032-692-7798
- 주 소/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87-19 (429-010)

### ■전 주

- 사 무/ 0652-287-7324 • 상 담/ 0652-283-9855 • 팩 스/ 0652-287-7324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6-1 소서빌딩 503호 (560-020)

### ■광 주

- 사 무/ 062-363-7739, 363-0485 • 상 담/ 062-363-0487,363-0442,363-0443
- 팩 스/ 062-363-0486
-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70-1 3층 (502-200)



희망이 있는 세상, 평등과 나눔의 사회

# 이젠 여성이 만듭니다

## ■부 산

•사 무/ 051-817-4321 •상 담/ 051-817-6464,817-6474 •팩 스/ 051-817-4320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3-13 9/5 2층 (614-031)

## ■대 구

•사 무/ 053-475-8084,475-8086 •상 담/ 053-475-8082,3 •팩 스/ 053-472-1711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3동 561-46번지 2층 (705-023)

## ■대구여전부설 : 가정폭력치료센터

•사 무/ 053-475-8086 •팩 스/ 053-472-1712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595-11 경한빌딩 3층 (705-021)

## ■울 산

•사 무/ 052-245-6713,244-1555 •상 담/ 052-211-1205 •팩 스/ 052-245-6713  
•주 소/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성남동 68-4 2층 (681-210)

## ■청 주

•사 무/ 0431-252-0966~7 •상 담/ 0431-252-0968~9 •팩 스/ 0431-255-0966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133-1번지 3층 (360-041)

## ■창 원

•사 무/ 0551-266-3722 •상 담/ 0551-283-4933 •팩 스/ 0551-283-3722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68-5 신월민원센터내 (641-060)

## ■군 산

•사 무/ 0654-445-2285 •상 담/ 0654-61-6753 •팩 스/ 0654-466-1521  
•주 소/ 전북 군산시 문화동 888번지 진포문화예술원 내 (573-140)

## ■천 안

•사 무/ 0417-574-0505~6 •상 담/ 0417-572-2000,572-0505 •팩 스/ 0417-574-0506  
•주 소/ 충남 천안시 쌍용동 886 농협 2층 (330-090)

## ■익 산

•사 무/ 0653-858-9191 •상 담/ 0653-858-9191 •팩 스/ 0653-857-8842  
•주 소/ 전북 익산시 창인1가 49-40 (570-021)

## ■강 룡

•사 무/ 0391-646-1985 •상 담/ 0391-646-2333~4 •팩 스/ 0391-646-1983  
•주 소/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26-14 강현규치과 4층 (210-080)

## ■광 명(준)

•사 무/ 614-7673 •상 담/ 681-0238 •팩 스/ 614-7673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373번지 한화종합상가 202호 (423-033)

## ■서울 강서양천지회

•사 무/ 605-8455 -팩스겸용 •상 담/ 605-8466  
•주 소/ 강서구 화곡6동 796-7 세실빌딩 4층 (157-010)

상담과 인권활동을 통해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창조적인 여성의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외된 여성들과 모성보호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합니다.

경쟁과 폭력으로 일그러진 사회를 나눔과 평화의 문화로 만들어 갑니다.

여성의 지도력 개발과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구조에 여성의 참여와 영향력을 높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평등 실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여성사회교육, 평생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의식향상과 잠재능력을 개발합니다.

### 주요 활동

- 정 책 활 동/ 여성정책 평가, 개발 ▷연구보고서 발행, 정책제안 활동
- 상 담 활 동/ 가정폭력, 외도, 시집갈등 등 가정 내 여성문제와 강간, 성희롱 등 성폭력문제 상담 ▷전화상담 ▷면접상담 ▷무료법률상담 ▷여성 1366위기전화(24시간 전화 상담)
- 교 육 활 동/ ▷여성상담전문교육 ▷미혼남녀성교육 ▷청소년성교육 ▷팔들을 위한 캠프 ▷여성인권교육 ▷성교육강사 양성교육 ▷정보통신 교육 ▷성폭력상담 전문교육 ▷가정폭력가해자교육
- 여성인권활동/ 가정폭력, 성폭력을 비롯한 제반 여성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사회여론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활동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정평등실현을 위한 모임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모니터팀
- 연 대 활 동/ 여성단체, 시민단체, 해외 여성단체들과의 교류 및 연대 ▷Women's Alert Network(세계여성인권연대)운영
- 문화홍보활동/ ▷계간 "여성의 눈으로"발행 ▷"여성수첩"제작 판매 ▷영문회지(연 1회)발행 ▷상담, 인권 관련 기획출판 ▷문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대안적인 여성문화창조 ▷여성에 대한 폭력-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문화행사 개최 ▷단오장터 개최
- 회 원 활 동/ ▷상담회원 ▷후원회원 ▷자원활동(사무/전문영역별, 부서별 활동) ▷소모임활동/ 직장여성모임, 매스컴 모니터모임, 여성상담 연구모임, 성교육강사 모임, 상담원소모임, 의정모니터모임, 해외여성소식읽기모임, 이혼여성모임, 여성학연구모임, 인권지킴이모임, 문화소모임(연극, 영화, 사진, 춤, 노래, 글쓰기 등) ▷평등문화를 가꾸는 남성모임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부설기관

- 쉼터 ▷매맞는 아내와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긴급피난처 ▷운영지부-서울, 부산
- 일하는 여성의집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여성의 경제능력 향상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직업훈련, 직종 개발,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 성폭력상담소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피해상담, 심리적·의료적·법률적 지원 ▷보건복지부 지정 성폭력상담원위탁교육기관으로 연 1회 성폭력상담원 교육 실시
-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에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성평등사회를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후원·자료회원 계좌: 중소기업은행 031-021806-04-012 / 지로: 8300045



자 료 집

- 인신매매와 매춘여성(1985)
-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연합회 활동보고서(1985)
- 빈곤과 자살 공개토론회 보고서(1985)
- 개원 4주년 기념보고서-남녀결합의 불평등 구조(1987)
- 성폭력 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1991)
- 개원 9주년기념 아내구타 공개토론회 자료집
- 매 맞는 아내, 깨어진 삶”(1992)
-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2
- 아내구타, 아내에 대한 성적학대, 아내강간(1992)
-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공동체(1994)
- 여성상담 심포지움 자료집(1994)
- 여성상담 사례집(1995)
- 전국여성상담전문가 워크숍(1995)
-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1995)
- 여성상담과 여성복지(1995)
- 매맞는 여성을 위한 피난처 모델 연구 토론회(1997)
-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1997)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모니터교육(1997)
- 안전한 사회, 건강한 아이들
- 부모와 함께 보는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서(1997)
- 성폭력상담 전문교육 자료집(1998)
- 여성1366상담매뉴얼(1998)
- 여성인권의 현황과 과제(1998)
- 여성복지시설의 평가지표개발 연구발표회 자료집(1998)
- 가정폭력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1998)
- 아시아의 여성인권:무력갈등과 성폭력(1998)
- 양성평등적 자녀양육 세미나 자료집(1998)
- 경제위기하에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역할(1998)

기획단행본

- 조용히 소리 질러라 이웃이 듣는다(에린피찌 지음, 일월서각 발행, 1986)
- 자라는 우리 배우는 성(광주여성의전화 역음, 여성신문사, 1992)
-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한국여성의전화 역음, 그린비 발행, 1993)
- 쉼터이야기(한국여성의전화 역음, 그린비 발행, 1994)
- 민들레는 살아 있다(부산여성의전화 역음, 지평, 1996)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1997), 남남출판
- 한국여성인권운동사(99년 출간예정)

비 디 오

- 굴레를 벗고서(1989) • 성폭력 그 사슬을 끊고(1993)
- 아내구타 극영화(아주 먼 내일(1996)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5주년 기념 홍보 비디오(1996)